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0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0

(제11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인 영 태

나. 제안사유

-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21호로 농어촌 정비법 제18조의 2규정에 의거 농어촌 용수이용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안이 신설되었으며 같은해 7월 27일 대통령령 제16919호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규정에 의거 농어촌 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상위 법률의 위임근거를 둔 제정조례안임.

다. 주요내용

● 운영계획의 수립

-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음 (안 제3조)

●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 (안 제4조)

● 용수의 오염방지

-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

(안 제5조)

● 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군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화순군 농어촌 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키 위한 내용으로, 제1조의 조문중 농촌 정비법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자구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하나 동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으로 보아 제1조 목적을 “농촌 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위해 농촌 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을 수정 검토됨.
- 동조례 제정의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으며, 절차상 화순군 공고 제 2003-266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첨부 :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농촌 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위해 농촌 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내·외국인투자지역 지원(안 제9조) :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 통신 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 지원
- 입지 임대(안 제10조) : 예산 범위내에서 특정산단 또는 투자희망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에 임대 할 수 있음.
- 화순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안 제12조) : 화순군 외 소재 공장의 화순군 내 유치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안 제13조, 제14조)
 - (1) 재원 : 화순군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2) 기금사용 : 투자기업 용지매입, 시설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등
- 보조금 지원(안 제15조)
 - (1) 교육훈련 보조금 : 외국인 투자기업이 50명 이상 신규로 내국인을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6월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한도지원
 - (2) 시설보조금 :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내에서 지원
 - (3) 지원한도 : 보조금별 각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8조)
 - (1)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 제출
 - (2)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각종 서류첨부)를 군의회에 제출
- 지원의 취소 및 반환(안 제23조)
 - (1) 공장 가동 후 1년 이내에 휴·폐업한 경우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고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 없다고 판단될 경우
- (7) 지원 받은 후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8) 지원사항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는 전라남도 투자유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2년 8월 14일 훈령 제1076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알선 지원 및 상담업무등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31일 전라남도 조례 제2877호로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우리 군에서도 금번 동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절차상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등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